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일원테크(이두성)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32-225-1010 ② 02-2122-6795

2. 명칭 : 자동시공 장비를 이용한 아스팔트 표면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항온 정량배합 아스팔트 자동살포기를 활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도포하는 아스팔트 열화 예방 유지보수 기술로써 기존 덧씌우기 포장공법으로 인한분진 및 폐아스콘 발생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스팔트 도로 공용수명을 연장하여 유지보수 비용을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아스팔트 표면 강화제용 자동화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기존 아스팔트 표층에 도포하는 아스팔트 예방적 유지 보수·보호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1호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법 개정으로 선내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나.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49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